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 상품요약서

---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상품의 특이사항

###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목회자, 목회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및 고도재해장해의 위험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입니다.

###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무엇인가요?

A :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형의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또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거치형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납입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Q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적립액의 인출이 가능한가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 및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
-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납 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5년
전기납	신청불가

보험료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총 36개월 이내 월단위로 신청하며, 1회 신청기간 한도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최대 5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해당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위험보험료 등)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는 중단되고 보험계약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란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지난 이후(보험료 납입경과월수 기준)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퇴직,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시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험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보험료할인 또는 적립제도가 있나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매월 기본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본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할인하여 영수하는 방법(할인형) 또는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는 방법(가산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매월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8%
5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1,6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0.9%)
70만원 초과	3,400원 + (기본보험료 중 70만원 초과부분의 1.0%)

**Q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A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 1. 보험종류

- 연금보험
- 개인형
- 적립형/거치형

###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45세 ~ 85세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0세-Y세)년) 보증형
		확정연금형 10년확정형, 15년확정형, 20년확정형, 30년확정형, 100세((100세-Y세)년)확정형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Y)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가입나이	일시납	20 세 ~ (Y-3)세 (최대 80 세)
	5년납	20 세 ~ (Y-7)세 (최대 70 세)
	7년납	20 세 ~ (Y-9)세 (최대 70 세)
	10년납 이상	20 세 ~ (Y-납입기간)세 (최대 70 세)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적립형	거치형
보험료 납입기간	5/7/10년납 이상	일시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일시납

### 3. 보험료 납입한도

#### 가. 기본보험료

- 적립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합니다.  
1구좌 기준: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로 합니다.
- 거치형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00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적립형 :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또는 보험료납입종료이후기간 중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거치형 :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	(주계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주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000 만원
고도재해장애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해당장애지급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이 되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주)

- ①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②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③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을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⑥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⑧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⑨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⑩ 100세 보증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보증지급됩니다. 100세 확정을 선택할 경우, (100세-연금개시나이)년 동안 확정지급됩니다.
- ⑪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⑫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나. 보험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IV. 보험료 산출기초

###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재해사망률		3~100% 재해장해율		3~79% 재해장해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0.000148	0.000048	0.000200	0.000068	0.000180	0.000062
40세	0.000165	0.000046	0.000318	0.000126	0.000295	0.000122
60세	0.000467	0.000126	0.000556	0.000422	0.000438	0.000388

구분	개인연금사망률	
	남자	여자
50세	0.001130	0.000560
60세	0.001890	0.000660
70세	0.004030	0.001450

※ 개인연금사망률의 경우 가입나이 40세 기준입니다.

###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4. 적립이율

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 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1년 5월 현재 적립이율은 2.32%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적립이율도 변경됩니다.

###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내부지표  $\times$  (1 -  $\alpha$ ) + 외부지표  $\times$   $\alpha$
- 내부지표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외부지표는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5.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V.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목회자 복지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예시

#### □ 적립형

[기준 :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	858	95.3%	858	95.3%	900	858	95.3%	858	95.3%
6개월	1,800	1,720	95.6%	1,720	95.6%	1,800	1,720	95.6%	1,720	95.6%
9개월	2,700	2,585	95.7%	2,585	95.7%	2,700	2,586	95.8%	2,586	95.8%
1년	3,600	3,453	95.9%	3,453	95.9%	3,600	3,454	95.9%	3,454	95.9%
2년	7,200	6,958	96.6%	6,958	96.6%	7,200	6,960	96.7%	6,960	96.7%
3년	10,800	10,515	97.4%	10,515	97.4%	10,800	10,519	97.4%	10,519	97.4%
4년	14,400	14,126	98.1%	14,126	98.1%	14,400	14,132	98.1%	14,132	98.1%
5년	18,000	17,790	98.8%	17,790	98.8%	18,000	17,798	98.9%	17,798	98.9%
6년	21,600	21,510	99.6%	21,510	99.6%	21,600	21,520	99.6%	21,520	99.6%
7년	25,200	25,285	100.3%	25,285	100.3%	25,200	25,297	100.4%	25,297	100.4%
8년	28,800	29,182	101.3%	29,182	101.3%	28,800	29,196	101.4%	29,196	101.4%
9년	32,400	33,138	102.3%	33,138	102.3%	32,400	33,153	102.3%	33,153	102.3%
10년	36,000	37,153	103.2%	37,153	103.2%	36,000	37,170	103.3%	37,170	103.3%
15년	36,000	38,937	108.2%	38,937	108.2%	36,000	38,969	108.2%	38,969	108.2%
20년	36,000	40,807	113.4%	40,807	113.4%	36,000	40,858	113.5%	40,858	113.5%

[기준 :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Min[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5월 현재 공시이율(2.32%) ]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	859	95.4%	859	95.4%	900	859	95.4%	859	95.4%
6개월	1,800	1,723	95.7%	1,723	95.7%	1,800	1,724	95.8%	1,724	95.8%
9개월	2,700	2,593	96.0%	2,593	96.0%	2,700	2,594	96.1%	2,594	96.1%
1년	3,600	3,467	96.3%	3,467	96.3%	3,600	3,468	96.3%	3,468	96.3%
2년	7,200	7,012	97.4%	7,012	97.4%	7,200	7,014	97.4%	7,014	97.4%
3년	10,800	10,636	98.5%	10,636	98.5%	10,800	10,641	98.5%	10,641	98.5%
4년	14,400	14,342	99.6%	14,342	99.6%	14,400	14,349	99.6%	14,349	99.6%
5년	18,000	18,132	100.7%	18,132	100.7%	18,000	18,140	100.8%	18,140	100.8%
6년	21,600	22,007	101.9%	22,007	101.9%	21,600	22,016	101.9%	22,016	101.9%
7년	25,200	25,968	103.0%	25,968	103.0%	25,200	25,980	103.1%	25,980	103.1%
8년	28,800	30,085	104.5%	30,085	104.5%	28,800	30,099	104.5%	30,099	104.5%
9년	32,400	34,294	105.8%	34,294	105.8%	32,400	34,310	105.9%	34,310	105.9%
10년	36,000	38,597	107.2%	38,597	107.2%	36,000	38,615	107.3%	38,615	107.3%
15년	36,000	43,024	119.5%	43,024	119.5%	36,000	43,059	119.6%	43,059	119.6%
20년	36,000	47,967	133.2%	47,967	133.2%	36,000	48,024	133.4%	48,024	133.4%

[기준 : 가입나이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2021년 5월 현재 공시이율(2.32%)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	859	95.4%	859	95.4%	900	859	95.4%	859	95.4%
6개월	1,800	1,724	95.8%	1,724	95.8%	1,800	1,724	95.8%	1,724	95.8%
9개월	2,700	2,593	96.0%	2,593	96.0%	2,700	2,594	96.1%	2,594	96.1%
1년	3,600	3,468	96.3%	3,468	96.3%	3,600	3,469	96.4%	3,469	96.4%
2년	7,200	7,017	97.5%	7,017	97.5%	7,200	7,020	97.5%	7,020	97.5%
3년	10,800	10,648	98.6%	10,648	98.6%	10,800	10,652	98.6%	10,652	98.6%
4년	14,400	14,363	99.7%	14,363	99.7%	14,400	14,369	99.8%	14,369	99.8%
5년	18,000	18,164	100.9%	18,164	100.9%	18,000	18,172	101.0%	18,172	101.0%
6년	21,600	22,054	102.1%	22,054	102.1%	21,600	22,063	102.1%	22,063	102.1%
7년	25,200	26,033	103.3%	26,033	103.3%	25,200	26,045	103.4%	26,045	103.4%
8년	28,800	30,170	104.8%	30,170	104.8%	28,800	30,184	104.8%	30,184	104.8%
9년	32,400	34,404	106.2%	34,404	106.2%	32,400	34,420	106.2%	34,420	106.2%
10년	36,000	38,735	107.6%	38,735	107.6%	36,000	38,753	107.6%	38,753	107.6%
15년	36,000	43,327	120.4%	43,327	120.4%	36,000	43,362	120.5%	43,362	120.5%
20년	36,000	48,471	134.6%	48,471	134.6%	36,000	48,529	134.8%	48,529	134.8%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1년 5월)의 공시이율 2.32% 중 낮은 이율, 현재(2021년 5월)의 공시이율 2.32%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5.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입니다.
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7.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치형

[기준 :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10년이내 1.5%, 10년초과 1.0%)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	49,383	98.7%	49,383	98.7%	50,000	49,384	98.7%	49,384	98.7%
6개월	50,000	49,401	98.8%	49,401	98.8%	50,000	49,403	98.8%	49,403	98.8%
9개월	50,000	49,419	98.8%	49,419	98.8%	50,000	49,421	98.8%	49,421	98.8%
1년	50,000	49,435	98.8%	49,435	98.8%	50,000	49,438	98.8%	49,438	98.8%
2년	50,000	49,869	99.7%	49,869	99.7%	50,000	49,876	99.7%	49,876	99.7%
3년	50,000	50,431	100.8%	50,431	100.8%	50,000	50,441	100.8%	50,441	100.8%

[기준 :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Min[ 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5월 현재 공시이율(2.32%) ]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	49,475	98.9%	49,475	98.9%	50,000	49,476	98.9%	49,476	98.9%
6개월	50,000	49,586	99.1%	49,586	99.1%	50,000	49,587	99.1%	49,587	99.1%
9개월	50,000	49,695	99.3%	49,695	99.3%	50,000	49,697	99.3%	49,697	99.3%
1년	50,000	49,803	99.6%	49,803	99.6%	50,000	49,806	99.6%	49,806	99.6%
2년	50,000	50,614	101.2%	50,614	101.2%	50,000	50,621	101.2%	50,621	101.2%
3년	50,000	51,566	103.1%	51,566	103.1%	50,000	51,576	103.1%	51,576	103.1%

[기준 : 가입나이 55세, 기본보험료 5,000만원, 58세 연금개시, 일시납(단위: 천원)]

경과 기간	2021년 5월 현재 공시이율(2.32%)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 보험료(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	49,481	99.0%	49,481	99.0%	50,000	49,482	99.0%	49,482	99.0%
6개월	50,000	49,596	99.2%	49,596	99.2%	50,000	49,597	99.2%	49,597	99.2%
9개월	50,000	49,710	99.4%	49,710	99.4%	50,000	49,712	99.4%	49,712	99.4%
1년	50,000	49,823	99.7%	49,823	99.7%	50,000	49,826	99.7%	49,826	99.7%
2년	50,000	50,655	101.3%	50,655	101.3%	50,000	50,661	101.3%	50,661	101.3%
3년	50,000	51,628	103.3%	51,628	103.3%	50,000	51,638	103.3%	51,638	103.3%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1년 5월)의 공시이율 2.32% 중 낮은 이율, 현재(2021년 5월)의 공시이율 2.32%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5.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 입니다.
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7.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8.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Ⅶ. 모집수수료율

### Q :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보험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사업비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해당사항 없음

## Ⅷ.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적립형]

####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월 30만원]

1년~7년	8년~10년	11년~20년
4.8523% ~ 4.8657%	3.0690% ~ 3.0757%	0.5923% ~ 0.6423%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1.8% (5,400 원) 7년 초과 10년 이내: 0.0% (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0% (9,000 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0.5% (1,500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523% ~ 0.1423% (157 원 ~ 427 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0%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	0%	0%	0%	0%	0%	0%	0%

####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주)
적립액 인출 수수료	적립액 인출에 따른 비용	적립액 인출시	없음

(주)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재납입 할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Min(추가납입보험료의0.3%, 30,000원)을 부과함

[거치형]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55세, 58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초회	2차월 ~ 15차월까지	16차월 ~ 3년까지
1.3807%	0.1107%~0.1107%	0.0307%~0.0308%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가입시	초회: 기본보험료의 0.08%(40,000 원)
		매월	2차월~15차월까지 : 0.08%(40,000 원)
	계약관리비용	가입시	초회: 기본보험료의 1.3%(650,000 원)
		매월	2차월 이후: 기본보험료의 0.03%(15,000 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7% ~ 0.0008% (354원 ~ 391원)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0%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해지공제금액(만원)	0	0	0
해지공제비율	0%	0%	0%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sup>(주)</sup>
적립액 인출 수수료	적립액 인출에 따른 비용	적립액 인출시	없음

(주) 다만,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재납입 할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Min(추가납입보험료의0.3%, 30,000원)을 부과함